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9.6)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무위원회

[곽 승 욱]

목 차

1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6
3	거창승강기벨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10
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5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6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21
7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25
8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	28
9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33
10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11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40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8.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8. 28.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2호·제4호서식)
 - (1) 「지방재정법」 제10조 ⇒ 「지방재정법」 제13조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 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안 제3조 ~ 제7조)
 - (1) 의 규정에 의한(의하여) ⇒ 에 따른(따라)
 - (2) 내지 ⇒ ~ 부터 ~ 까지
 - (3) 기타 ⇒ 그 밖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3. 07. 29. ~ 08. 20.) 결과 : 의견 없음.

리.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13조

[시행 2013.7.16.] [법률 제11900호, 2013.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

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8.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8. 28.

2. 개정이유

-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에 대한 탐구심과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을 운영함으로써 과학문화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과학관의 업무를 정함(안 제3조)

-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과학문화 공간제공, 우주과학지식 보급을 위한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개설·운영 등

나. 과학관의 관람시간 및 휴관일을 정함(안 제4조)

- (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 휴 관 일 :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다. 관람료 기준 및 관람료 면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별표)

라. 과학관의 관람제한, 변상책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제9조)

마. 과학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0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별표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 18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3. 07. 23. ~ 08.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에 대한 탐구심과 지식 보급, 과학문화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4.24.] [법률 제11620호, 2013.1.23., 일부개정]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24]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

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의 제작·판매
 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판매
 3. 실험 기자재의 제작·판매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운영
 6. 전기·전자·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운영
 8. 매점 등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 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거창승강기벨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8.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8. 28.

2. 제안이유

-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에서 동의한 「거창승강기산업벨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안)」에 따라 계약체결한 선도기업체의 투자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함에 따라 대체업체를 유치하여 성공적인 승강기벨리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투자계획 이행 불가업체 현황

- 회사명 : (주)신한엘리베이타
- 소재지 및 대표자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193-3, 음한욱
- 계약당사자 및 체결일 : 거창군 ⇔ (주)신한엘리베이타, 2011. 1. 12
- 분양면적 및 업체 투자계획

투자위치	부지면적	투자금액	고용인원	투자기간	비고
거창일반산단 5BL, ⑥Lot	3,306㎡ (1,000평)	10.7억원	10명	2011.1월~2014	

○ 우리군 지원사항

지원분야	부지 분양가			비고
	합 계	자 체	보 조(거창군)	
입지보조금	303,710,100원	30,371,010원 (10%)	273,339,090원(90%) [기 지원141,068,610원 잔 액132,270,480원]	

- 투자이행 포기사유 : 현 김포공장이 매각되지 않아 투자자금 확보난
- 조치사항 : 기 체결한 계약서 해지(해제), 기 지원한 보조금 회수

나. 대체업체 현황 및 투자계획

- 회사명 : 한국우시오(주)
- 공 장 : 경남 창원군 남지읍 성사리 558번지
- 설립일 : 2005. 7. 18 ○ 대표이사 : 이민호 외 1명(종업원 14명)
- 기업분류 : 일반법인, 소기업 ○ 업 종 : C31114(선박용 엘리베이터)
- 기업신용등급 : BB-(보통이상)
- 신용흐름등급 : CR2(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양호)

〈한국우시오(주) 투자의향〉

-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5번지
- 부지 및 건축면적 : 9,302㎡(2,814평), 1,535.5㎡(464평)건축
- 투자내용 : 1일 상시고용인원 30명, 27억원 투자(2013 ~ 2016)
- 투자조건 : (주)신한엘리베이터에 지원키로 한 각종 지원금 지원
- ※ 입지보조금 303,710천원중(자체 30,371천원, 지원 273,339천원)

다. 한국우시오(주) 협력업체 유치계획

- 회사명 : (주)경민 (대표이사 : 황윤경)
- 공 장 : 경남 창원군 대합면 등지리 264번지
- 설립일 : 2011. 7. 1
- 사업종류 : 선박용 엘리베이터 부품 제조업

〈(주)경민 투자의향〉

-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6번지
- 부지 및 건축면적 : 9,951㎡(3,010평), 1,455㎡(440평)건축
- 투자내용 : 1일 상시고용인원 25명, 31억원 투자(2013 ~ 2016)

라. 기존업체와 대체업체간 투자규모 비교

구 분	기존업체	대체업체(협력업체)			비 고
	(주)신한엘리베이터	계	한국우시오(주)	(주)경민	
투자금액	11억	58억	27억	31억	5.3배
고용인원	10명	55명	30명	25명	5.5배
부지면적	3,306㎡ (1,000평)	19,253㎡ (5,824평)	9,302㎡ (2,814평)	9,951㎡ (3,010평)	5.8배

4. 참고사항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

5. 검토의견

- 한국우시오(주)는 선박용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이며, (주)경민은 한국우시오(주)의 주된 협력업체로서 선박용 엘리베이터 부품 생산업체임
- 한국우시오(주)는 투자이행을 포기한 (주)신한엘리베이타 보다 투자규모와 고용창출 등이 2배 이상 크고, 협력업체인 (주)경민이 함께 투자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실제 5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성공적인 승강기밸리 조성을 위하여 유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 에 소재 하는 승강기산업체가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벨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08. 27.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3. 08. 28.

2.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생업지원 조항 삭제함(안 제9조)

-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2013.6.12.)됨에 따라 삭제 함

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의 어순을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 ⇒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 월 5만원(현행) ⇒ 월 8만원(변경)

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서식에 반영함(안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지함

(2)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기재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700백만원(2014년도 예산 확보 계획)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범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3. 06. 10. ~ 06. 3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9조**에서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2013.6.12) 됨에 따라 생업지원 조항을 삭제함.

- **안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월 5만원”(현행) ⇒ “월8만원”(변경)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 이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26.] [법률 제11945호, 2013.7.26.,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거창군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8.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8. 28.

2. 개정이유

- 저소득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로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위원회 심의과정을 삭제함
(안 제10조)
 - 현행 :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매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 삭제함
- 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용자금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함(안 제11조제3항제2호, 제12조제4항제2호)
 - 신설 :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입법예고(2013. 07. 13. ~ 08.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용자금에 대한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상환부담을 해소하는 등 사회복지사업 과 기금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8.27.
- 나. 제출자 : 강철우, 조선제, 이애숙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08.28.

2. 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거창군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다. 지원사업(안 제6조)
 -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 (안 제8조, 제9조)
- 군수는 군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운영(안 제10조, 제11조)
-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3. 09. 19. ~ 09. 2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제8조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차별 받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군수의 책임을 명시함.
또한 제2항에서 군수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협력)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이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사회에서 살 권리를 조례에서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특이사항 없음.
 - **안 제6조**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시 조례의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으로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하여야 하는 당연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중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8.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8. 28.

2. 제안이유

- 가조119안전센터 청사는 거창군 소유 토지에 경상남도 소유 건물로 당초 신축시에는 지역대 정원 규모로 건축되었으나 안전센터로의 승격 후 근무인원 및 장비의 증가에 따라 거창 소방서로부터 청사 증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요청이 있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증축을 통해 근무환경개선과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토지사용 승낙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운영현황

- 가조119안전센터는 2005년도 지역대 정원규모로 신축
- 2010년도 안전센터 승격이후 필수공간 협소로 업무수행 애로
 - ※ 2층 옥상에 컨테이너로 임시 공간 활용중
- 근무현황

지역대		안전센터		비고
근무인원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형태	
4명	2인 2교대	13명	4인 3교대	의무소방원 2명 별도

○ 청사현황

- 토지(소유:거창군) : 가조면 마상리 467-6, 1,026m²
- 건물(소유:경남도) : 철근콘크리트조, 2층, 233.62m²

○ 운영현황

- 관할지역 : 3개면(가조면, 가북면, 남하면)/3,669세대, 7,275명
- 면 적 : 212km²(거창군 전체의 26.4%)

나. 증축규모 : 130m²

- 1층 : 14m²(현 175m²), 2층 : 116m²(현 58m²)

다. 소요예산 : 236백만원(도비)

라. 추진일정

- 경남도 공유재산심의회 : '13. 8월
- 거창군 협의 및 거창군의회 동의 : '13. 9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13. 10월 ~ 12월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

5. 검토의견

- 가조119안전센터는 2005년도 지역대 4명의 정원규모로 신축 하였으나 2010년 안전센터로 승격 근무인원 13명으로 인원 및 장비의 증가에 따라 필수공간 협소로 업무수행 애로와 거창소방서로부터 청사 증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요청이 있음.
-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청사 증축을 통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전문개정,2009.4.24]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8.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8. 28.

2. 제안이유

- 가조 기미독립만세기념탑은 거창지역의 대표적인 3.1운동 상징물로서 1981년 기념탑건설위원회(민간단체)에서 대대적인 모금운동으로 건립 하였으나, 이후 추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를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함.

3. 취득재산의 표시

- 토 지 (단위: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4필지	2,203	20,775			
1	전	가조면 장기리 1166-1	509	5,090	'13. 9	봉안각 건립	남하면 양항리 손병섭
2	답	가조면 장기리 1181-1	377	3,491	"	주차장부지사용	신점암
3	답	가조면 장기리 1181-2	391	3,620	"	"	"
4	답	가조면 장기리 1180-1	926	8,574	"	"	창원시 반지동 구본근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및 제4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가조 기미독립만세기념탑은 3,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3.1운동 발생지라는 역사적인 상징물로서 1981년 기념탑건설위원회(민간단체)에서 대대적인 모금운동으로 건립 하였으나, 이후 추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3.1운동 희생영령의 명예를 더 높이고,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을 위한 현충시설의 품격과 위상을 갖추어 자라나는 2세에게 민족정신과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

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국제회의장, 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의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8.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8. 28.

2.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라.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마. 간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사.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아.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자. 수당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카. 운영세칙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1조

나. 예산조치 : 2천만원(2013년도 예산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3. 07. 02. ~ 07. 2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3.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은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토지소유자협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신청
2.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4. 지적공부정리 정지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6.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토지소유자협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⑩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8.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8. 28.

2. 개정이유

- 「도서관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조직개편 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순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도서관법」 개정사항 반영함(안 제1조, 제8조, 제16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제22조 ⇒ 「도서관법」 제27조제28조
- 나. 도서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 상림리 774번지 ⇒ 거열로6길 11
- 다.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제6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
 - 교육문화센터소장 ⇒ 군수, 문화관광과장
- 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영향분석결과 반영함(안 제16조)
 - 단서 신설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
- 마. 휴관일 자유열람실 이용시간 신설 및 휴관일을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 (1) 휴관일 자유열람실 개방시간 : 09:00 ~ 18:00
 - (2) 휴관일 : (현행)월요일 ⇒ (변경)금요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7조·제28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3. 06. 20. ~ 07.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조직개편 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순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 도서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 **안 제4조·제6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제15조**에서 부서명칭 ‘교육문화센터소장’을 ‘군수, 문화관광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성별 영향분석결과를 반영 하였으며,
- **안 제4조,제5조**에서 휴관일 자유열람실 이용시간 신설 및 휴관일 변경(월요일⇒ 금요일)은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도서관법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3.25>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8.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8. 28.

2. 개정이유

-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집단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한센인 정착촌의 실제 거주가구가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10세대 이상이 이주하는 경우에 지원

나. 지원 대상사업을 정함(안 제4조)

- (1) 한센인의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한 통상적 수준의 생활기본 시설사업
- (2) 한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권익강화 및 환경 개선사업
-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14년도 예산 1,045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3. 06. 24. ~ 07. 1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집단이주 시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한센인 정착촌의 실제 거주가구가 군수가 지정 하는 지역으로 10세대이상이 이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 대상을 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 한센인의 기본적생활유지를 위한 통상적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사업,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권익강화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및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음.

○ 따라서 이 제정조례안은 한센인의 집단이주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